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전형료 반환신청서  (「고등교육법」제34조의4 제4항) | | | | | |
| **원서 접수번호 :** | | | | **접수일자 : 2020. . .** | |
| **지원자** | **성** **명** | |  | **본인 연락처** |  |
| **보호자 연락처** |  |
| **생 년 월 일** | |  | | |
| **모 집 단 위** | | 대학(원) 계열/학부/과 전공 | | |
| **전 형 구 분** | | □ 지역균형선발전형 □ 일반전형 □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 | | |
| **반환 요청 사유** | | | □ 착오과납 □ 대학 귀책사유 □ 천재지변 □ 지원자의 입원ㆍ사망 | | |
| **반환 계좌 정보** | | | | | |
| **금융기관명** | | |  | **계좌주명** |  |
| **계좌번호** | | |  | **계좌주와의 관계** |  |
| **위 반환 요청 사유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합니다.**  **2020년 월 일**  **지원자 : (서명 또는 인)**  **보호자 : (서명 또는 인)**  **서울대학교 총장 귀하** | | | | | |
|  | | | | | |
| **첨부서류** | | **1. 반환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**  **2. 증빙서류 ▢ 의료기관 입원확인서**  **▢ 기타( )** | | | |
| **[입학전형료 반환 안내]**  「고등교육법」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 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  2.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※ 위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전형의 **최종 합격자 발표일**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신청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  ※ 원서접수(인터넷 접수 포함)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 ※ 반환 요청 사유를 심사하여 증빙서류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. | | | | | |